한국레즈비언상담소 열아홉 살 기념 포럼

"레즈비언으로 끝까지 잘 살아보세!"

일시: 2013년 12월 1일(日) 오후 2시 장소: 마포 민중의 집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열아홉 살 기념 포럼

"레즈비언으로 끝까지 잘 살아보세!"

2013년 12월 1일(日) 오후 2시, 마포 민중의 집

1부. 강연: 레즈비언 '가족'의 법적 권리 찾기

14:00~15:30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입양/상속의 절차와 효력있는 유언장 쓰기를 중심으로

15:30~17:00

토리(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의료현장에서 LGBT의 의사결정력?

17:00~18:00

저녁식사.휴식

2부. 수다방: 레즈비언 직장 탐구생활

18:00~19:30

10인 10색 레즈비언 패널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이야기

1부. 레즈비언 '가족'의 법적 권리 찾기

가. 입양/상속의 절차와 효력있는 유언장 쓰기를 중심으로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레즈비언 가족'은 무엇일까? '가족'은 무엇일까?

처음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부터 <레즈비언 '가족'의 법적 권리 찾기-입양/상속의 절차와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 쓰기>라는 주제로 포럼제안을 받았을 때는, 단순하게 가족구성권연구모임1)에서 진행해 온 <찬란한 유언장 행사>의 내용과 유언장 직접 써보기를 하면 되겠다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오늘 포럼을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하다 보니, 도대체 '레즈비언 가족'은 무엇이며, 나아가 '가족'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부터 빠지게 되었다. 레즈비언들이 맺는 파트너십 관계가 모두 '가족'인가, 아니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이나 '혼인'과 유사한 관계인가? 레즈비언 커플들은 혼인이나 파트너십제도(예를 들어, 프랑스 시민결합 등)와 같은 법적 관계로 인정받고 싶어 할까? 그렇다면 혼인이나 파트너십 관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필요한 걸까? 그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어느 범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원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고 보니 정작 내 자신도 이러한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이 없고, 파트너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는 2007년부터 현재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나 사실혼 같은 관계일까? 그러한 관계를 원하나? 집에서는 서로 '여보'라고 부르고, 개3마리를 함께 키우고, 한 침대에서 자며, 공동 생활비를 매월 절반씩 내고 있는데, 나는, 내 파트너는 서로의 '가족'이 되길 원하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권, 혈연가족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을 서로에게 주고 싶어 하거나 서로가 갖고 싶어 하나? 서로의 원가족의 관계에서도 가족이 되고 싶은가. 만약, 우리가 헤어지거나, 한 명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망한다면, 어떤 관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완전히 법제도 밖에 있는 관계이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전형성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수 년 동안 동거해온 커플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계의 의미가 각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입양/상속의 절차를 알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만 작성하면, 레즈비언 커플들의 법적인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한정된 것만 상상하고 얘기했던 것은 아닐까하는 고민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 싶었다.

¹⁾ 정식명칭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의 실질적 요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가족 담론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에 만들어진 모임이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화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2. 파트너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 #1 40년 간 함께 살아 온 여고동창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6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1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40분께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 A(62·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옆 동 20층에 올라가 복도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 복도 계단에서는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라는 유서와 함께 점퍼와 운동화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여고 동창인 B(62)씨와 40년 간 함께 살았다. 그러다 최근 B씨가 최근 암 판정을 받고 입원한 이후 B씨 친척이 아파트 열쇠를 바꾸는 바람에 살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집을 구해 따로 살았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살던 친구가 암 판정을 받았고 친구를 자주 보지 못하게 된 것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투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
-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며 우정을 과시했던 여고동창생 2명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했 #2 다. 한명은 최근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돼 숨졌고 다른 한명은 친구의 가족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31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40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A(62·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 옆 동 20층에 올라가 복도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 아파트 복도 에서 A씨의 점퍼와 운동화가, A씨 바지 주머니에는 '시신을 기증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유서가 각각 발 견됐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산의 한 여상을 졸업한 뒤 동창인 B(62)씨와 40년을 동거해왔다. 1990 년대부터 둘은 이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주로 B씨가 회사생활 등을 하며 돈벌이를 했고 A씨는 살림살이 를 했다. 그러나 지난 9월말 몸이 몹시 수척해진 B씨가 병원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암 말기 진단을 받았 다.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된 B씨는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이달 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 졌다.당시 A씨는 B씨를 간병하면서 B씨 가족과 경제적인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간병과정에서 B씨 명의로 된 아파트와 보험금 상속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 라고 요구해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A씨는 병원을 떠났고 B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패물 등 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모조리 챙겨 나갔다. 이후 B씨 가족은 A씨가 B씨 명의 통장에서 주식배당 금, 국민연금 등의 현금을 빼간 사실을 알고 A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아파트 집열쇠도 바꿨다. B씨 가족은 40년간 동거하며 최근에는 조선소 허드렛일까지 하며 가장역할을 해온 B씨가 암말 기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 같은 요구를 한 A씨에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집을 나온 A씨는 부산진 구 양정동에서 방을 얻어 살다가 뒤늦게 B씨의 사망소식을 접했고 한달여만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A씨가 동창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던 B씨가 암으로 숨지고 경제적 인 갈등까지 겹치자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3)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 그녀들은 기사에서 '여고동창'관계라고 명명되었다. 그러나 기사 내용만봐도, 그녀들이 단순한 여고동창 관계를 넘어, 훨씬 깊은 인생의 동반자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녀들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했다. 현재 민법에서는 혼인이나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상 가족'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40년간 동거한 A보다 기사에 나온 'B씨 가족', 정확히는 B의 조카가 B의 명의로 된 아파트, 예금, 재산 등을 상속받게되었다. 심지어 B의 조카는 A가 함께 살던 아파트 집 열쇠도 바꾸고 A를 절도혐의로 고소했다. 그런과정에서 A가 느꼈을 모멸감과 박탈감은 얼마나 깊었을까.

I. 상속이란?

²⁾ 연합뉴스 2013.10.31.자 '40년 함께 산 여고동창 암 판정에 투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69760 3) 연합뉴스 2013.10.31.자, '40년 동거한 여고동창생의 비극적인 죽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70622

ㅇ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누군가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 ②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 ③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1순위자가 없으면 2순위자인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남편)가 사망하였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을 하게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와 망자의 부모(시부모)가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만약, 배우자(남편)가 사망하였는데 자녀도 없고, 시부모도 없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된다.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전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ㅇ 법정상속분

민법에서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 먼저 동순위의 상속인은 균분하여 상속한다. 자녀인 경우 아들/딸, 기혼/미혼의 차별 없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배우자인 경우는 50%를 가산하여 1.5의 비율을 상속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자녀가 아들, 딸 둘인 경우에 상속분의 비율은 1.5(배우자): 1(아들): 1(딸)이 된다.

II. 유언을 하는 방법?

ㅇ 유언이란?

일반적으로 유언이란 '사람이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뜻하지만, 법률적으로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는 최종적 의사표시'를 뜻한다. 즉, 사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인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1060조).

ㅇ 유언의 내용?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사항에 한해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은 1)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친족회원의 지정), 2)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유증,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3)상속에 관한 사항(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4)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등이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유언, 예를 들어, 사후에 화장을 해달라거나, 장기기증, 장례식 절차에 대한 내용 등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사후에 남기는 말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유증이란?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이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비율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증여하거나,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하여 증여하는 방법(예를 들면 'A부동산은 갑에게 준다')이 있다.

ㅇ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유언서의 존부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쉽게 판명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복사본에 날인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다. 유언장에 작성일자가 없거나, 날인이나 성명이 빠진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주소 정도만빠진 경우에는 판례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자필증서는 유언서 전부를 자필, 즉 자기가 직접 써야 한다. 타인이 대필한 것은 무효이다. 사용하는 언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어도 상관이 없다. 유언서 전문은 한 장의 종이에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장이 되어도, '간인' 등으로 그것이 하나의 유언서라는 것이 확인되면 된다. 유언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생존 최후로 한 유언이 유언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정시에는 자필하고 날인하 여야 효력이 생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할 것, (2)작성연월일은 자서할 것(연월일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유언의성립 시기는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가 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여러 개의유언증서가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연월일이 없는 유언서는 무효이다.) (3)주소를 자서할 것 (4)성명을 자서할 것 (5)날인할 것(날인은 반드시 인장으로 할 필요가 없고무인도 상관없지만, 날인이 없고 서명만 있는 것은 무효이다.)

ㅇ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멸실, 훼손, 은닉, 위조, 변조의 위험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공정 내지 공증의 효력을 가진 증서이어서, 곧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에 비하여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며 또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공증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등 공증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ㅇ 유류분이란?

망인이 어떤 특정인에게 유증을 하는 때에는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민법상유류분만큼은 처분을 하지 못하고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유증을 하거나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를 하였다면 상속인은 자기의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속 개시 전에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동성 파트너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더라도, 부모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ㅇ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싶다면?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유언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생존 최후로 한 유언이 유언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전에 법률상 의무나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예컨대 유언자가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유증을 받기로 한 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작성례는 쉽고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필 유언장의 예입니다.

유언자 000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유언자는 유언자의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파트너 한00(주민등록번호 711025-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128-1번지 303호)에게 유증합니다(포괄유증의 예시).

(특정유증의 예시: 유언자는 현재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시 ○○구 ○○동 ○○번지 ○○○㎡)의 전세반환보증금 중 오천만원은 파트너인 한00(주민등록번호 711025-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128-1번지 303호)에게 유증하고,

나머지 오천만원은 부모님에게 유증하며,

신한은행에 예치한 예금(계좌번호 ○○○-○○-○○○○)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고유번호 0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동)에게 유증합니다.)

2. 유언자는 다음의 사람을 유언집행자4)로 지정합니다.

유언집행자 성명: 000

주소: 00시 00구 00동 202번지

관계:친구

주민등록번호: 720525-0000000

3. 저의 시신은 화장을 해서 밤하늘의 오로라가 있는 캐내다 옐로나이프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12월 1일 유언자 : 오00 <u>(도장 날인)⁵⁾</u> 주소 : 00시 00구 00동 128-1번지 303호 주민등록번호 : 701214-0000000

⁴⁾ 유언집행자는 한 명만 지정해도 되고 여러 명 지정해도 됨. 만약 유언집행자가 아무도 없게 되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상속인도 없으면 법원이 지정을 함.

^{5) &}lt;u>도장날인이 아닌 서명은 효력이 없음.</u> 작성 날짜와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반드시 쓰고, 도장까지 꼭 찍어야만 유언장 으로서 효력이 인정됨.

3. 파트너 중 한 명이 아플 때

ㅇ 후견계약 공증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4). 따라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나 친구를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할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의 내용은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법률행위, 예를 들면 요양시설입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나 그 비용 마련을 위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등기나 세무신고, 주민등록신고 등의 공법상 행위도 포함된다.

임의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그리고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4).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동거하다가 헤어질 때

어느날 퀴어가족법률상담소에 티나라는 한 여자가 찾아왔다. 티나는 애인 벳과 헤어지고 싶지만 벳이 원치 않는다고 한다. 티나는 스물 여덟 살부터 지금까지 꼬박 십년 간 벳과 함께 살면서 벳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일을 월급도 안 받고 도와주었다고 했다. 티나는 벳과 함께 살게 되면서 서울로 혼자 올라왔고, 부모님, 언니, 친구들마저 다 연이 끊어졌다고 한다. 하루종일 음식점에서 일 하고나면 피곤해서 별다른 모임이나 취미 생활도 없이 십년을 벳만 보고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벳이 술만 먹으면 자꾸 때린다고 했다. 며칠 전에는 정말 죽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여성 상담 하는 곳에 전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둘의관계가 부부도 아니고, 애인이 여자라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 퀴어가족법률상담소를 어렵게 찾아왔다고 했다.

"이제 벳이랑 그만 같이 살고 싶은데, 벳이 원치를 않아요. 우리도 좋을 때는 정말 다른 부부들처럼 잘살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지만 사실, 막상 헤어진다고 해도 티나는 갈 곳은 없다. 벳과 함께 살았던 집이 티나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벳이 십년 전에 집을 살 때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티나 명의로 산 것이었다.

"벳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집 명의도 이전해놓고 나가라는데, 십년동안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 하고 살림한 게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때려서 못 살겠어서 나가는 건데, 위자료는커녕 정말 너무하지 않 나요?"

게다가 벳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면, 오히려 벳은 헤어지면 티나의 부모님에게 다 알려버릴 거라고 협박 한다고 한다.

"대체 뭘 알린다고 그러는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집에는 절대 알릴 수 없어요.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집을 나왔거든요. 이 사람한테 어쨌든 돈을 좀 받아서 집을 나와야할텐데, 방법이 없을까요?"6)

ㅇ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

인천지방법원은 2004년 레즈비언 커플의 사실혼관계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동성 간의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

^{6) 2013}년 2월 17일, LGBT 인권포럼에서 가족구성권연구모임에서 진행한 <퀴어가족법률상담 "사연과 전쟁" 동거, 의료, 유 언장을 중심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각색한 사연임.

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보아야 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면서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동성으로서 1980. 5. 2.부터 2001. 3. 19.까지 20여 년간 동거하면서 유사 성관계를 맺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하여 왔는데, 피고가 모든 재산이 피고의 명의로 있게 되자 원고와 원고의 부모를 무시하고, 원고를 의심하였으며, 폭행과 협박까지도하는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피고 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즉, 사실혼관계라고 함은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체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남녀 간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한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혼인제도의 의미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이상인(재판장) 김병찬 최승원]

ㅇ 아웃팅 협박

아웃팅 협박과 관련한 법률상담의 어려움은 아웃팅 협박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보호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형법은 아웃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웃팅 자체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명예훼손죄라는 범죄구성요건을 빌려야 하는데 이것이 딜레마이다.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악화시켰을 때 처벌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00는 레즈비언이야"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아웃팅을 매개로 한 협박, 공갈, 성폭력 등은 협박죄, 공갈죄, 성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상 아웃팅 자체 보다는 아웃팅을 매개로 한 협박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아웃팅이나 커밍아웃보다 아웃팅 협박을 겪고 있는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웃팅 협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와 주변의 지지가 중요하다.

○ 동거할 때부터 이별의 경우를 대비해야

동거하다가 헤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들은 무궁무진하다. 금전문제, 채무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전)애인의 가족까지 관련이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기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다거나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들도 있다. (전)애인과의 금전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은 동성결합의 인정에 대한 법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동성결합에 관한 법제도는 파트너의 관계가 성립해서 유지할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파트너십 관계를 해소시킬 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기여한 재산형성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라든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법제도가 없다보니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동거기간에도 이별의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인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공동으로 구입하였다면, 해당하는 지분만큼 공동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소유자라면 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면 된다. 함께 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각자 일정 금액을 기여를 하긴 했지만 금액이나 지분이 애매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 한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한 사람은 가사 일을 하기로 분담한 경우, 가사 일을 한 사람은 사회적인 경제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5. 자녀 입양. 커플의 공동 입양

○ 자녀 입양. 커플의 공동 입양

현재 법률상 단독으로 입양은 가능하지만 법률상 부부처럼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법 제867조, 2012.2.10. 본조신설).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였다.

-입양특례법상 양친이 될 자격

-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위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⁷⁾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입양특례법&joNo=&languageType=KO¶s=1#0000

-아동입양기관, 가정위탁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규정은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2007년 6월 기사에 의하면, 하리수씨가 자녀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국내 주요 입양기관은 "아무리 다른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트랜스젠더인 부모라면 입양이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8) 아직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나 동성 커플의 입양 불허/거부에 대한법적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

-친양자 제도는 혼인증인 부부만 가능

2013년 9월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규정해 비혼자 를 제외시킨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는다"고 헌법재판관 4명 합헌, 5명 위헌의견9)으로 가까스로 한헙 결정이 나왔다. 여의사인 A씨는 미혼 으로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 B씨와 자녀 2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들 양육에 적극 참여하며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이후 A씨는 B씨와 상의해 자녀들의 복리 를 위해서라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고, 자녀들도 동의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두 자녀에 대해 친양자 입양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민법은 친양자 입양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 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 독신자에는 미혼자, 이혼한 사람,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며, 이중 양육경험 이 있거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등은 양자에게 훌륭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자라도 그 후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혼인관 계에 바탕을 둔 안정된 양육환경을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10)

ㅇ 파트너를 '입양' 하는 경우

일본의 게이 커플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파트너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법률상 '가족'관계를 맺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민법은 양자가 될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70조, 제871조)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헤어질 때 파양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는데, 민법은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방이 입양의 무효, 취소 사유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트너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법률적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실질과 형식이 차이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국에서 동성결혼 제도나 파트너십 제도가 마련 되었을 때, 양친자 관계는 성립의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

⁸⁾ 동아일보 2007.6.12.자 하리수 "아이 기르고 싶다" 트랜스젠더 입양권 논란 http://news.donga.com/3/all/20070612/8452970/1

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¹⁰⁾ 오마이뉴스 2013.9.27.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 못한다" 가까스로 합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0442

- 6. 파트너십, 혼인 제도가 없어서 받는 차별
 -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혜택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배우자 중 1인이 직장가입자 인 경우 배우자로서 별도의 수익이 없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는 6억원 까지 증여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 기준에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의 요건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와 친족이 부양가 족으로 인정됨.
 - 생애최초로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인데, 30세 미만의 경우 부부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 만원 이하인 사람은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부부로 인정을 못받으면 단독세대주로 신청 불가함.
 - 출입국관리법상 배우자 비자발급.
 - 기타 직장에서의 가족 수당, 휴가 등
 - ㅇ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준비
 -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헌법원리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1997년 헌법재판소, 동성동본금혼제도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생활의 가장 본원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므로, 혼인·가족생활을 국가가 결정한 이념이나 목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민주주의원리와 문화국가원리에 터잡고 있는 우리 헌법상 용납되지 않고, 국가는 개인의 생활양식, 가족형태의 선택의 자유를 널리 존중하고, 인격적·애정적 인간관계에 터잡은 현대 가족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5년 헌법재판소, 호주제도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2013년 9월 7일, 공개 커밍아웃한 게이 커플인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씨의 결혼식이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적으로 치러졌다. 결혼식 중간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불청객이 난입하여 인분을 섞은 오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결혼식 전날에는 목사라는 사람의 일행이 와서 몇 시간동안 찬송가를 부르며 결혼식 무대 설치를 방해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지지 속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혼인 신고와 더불어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결혼식을 전후로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올해 7월과 9월, '가족구성권연구모임'에서는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미의 의미" 그리고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라는 주제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8월에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9월에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공동주취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본격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동성 결혼에 대하여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보수 기독계 중심의 반동성애 단체들의 공세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¹¹⁾ 동성결혼이 아닌 동성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혼인제도 외의 파트너십제도 등 혼인 외에 더 다양한 관계를 포 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동성애반대본부',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저지를위한의회선교연합' 등의 반대로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성적 지항'을 삭제시킨 일이 있고, 2013년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 김한길, 최원석 의원은 반대단체의 압력에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2) 이런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번 법정투쟁 역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동성파트너십이나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3년 올해에만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연방에서 동성혼인을 인정하는 등 동성파트너십이나 동성결혼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ㅇ 생활동반자등록법에 대한 논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등에서 생활동반자등록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비성애적 관계와 2인 이상의 공동체도 '가족'을 맺을 수 있는 내용 등을 구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시민결합권리증진연합(Taiwan Alliance to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 (TAPCPR))에서 Family Diversity 라는 흐름에서 현재 1)평등한 결혼(동성혼을 제도화하는 민법개정안), 2)파트너십 권리(시민결합법), 3)비혈연, 선택에 의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법안 3가지 법안을 모두 제정하려는 입법 운동을하고 있다.13) 2013년 10월 25일 오전에 대만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으로 1)민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2),3) 법안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아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결합에서 혼인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한 서구와의 차이점이다. 참고로 대만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5%정도고 현재 제1야당 대표이자 지난 대선후보가 동성결혼의 공개적인 지지자라는 것이 한국의 상황과 크게다르다고 한다.

생활동반자, 파트너십 관련한 입법은 각국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생활동반자등록법과 프랑스의 시민결합(PACS)의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파트너십의 성립요건에서부터 성립 후 파트너 사이의 신분상 효과, 파트너의 상속권 인정 문제, 파트너십을 해소하는 방식이나 사유, 파트너십 해소 후 상대방의 부양청구권과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문제, 상대방의 자에 대한 친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국내에서 파트너십 관련한 법률을 마련할 때도, 핵심적인 논쟁이 될 것이다. 특히,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신분관계의 변동, 파트너의 상속권 인정여부 및 상속순위의 문제, 자에 대한 공동입양 및 공동친권의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트너십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안적인 파트너십의 상은 무엇인지, 또는 현재 존재하는 파트너십의 관계나 욕구는 어떠한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7. 마치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주년기념포럼 타이틀이 "레즈비언으로 끝까지 잘 살아보세~!"이다. 나는 레즈비언으로 현재 파트너와 6년 넘게 동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자신조차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나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최근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도가 전혀 없어 인정되지 못한 관계, 박탈당해온 권리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이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상상하고 고민해 보았을까. 이 자리가 그런 이야기들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¹²⁾ 한겨례 2013.4.21.자, 민주당, 차별금지법안 철회…보수 기독교계 공세에 '무릎'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3900.html

¹³⁾ 희망을 만드는 법 블로그, 류민희 변호사의 '레인보우 타이페이 - 대만 LGBT 인권단체 방문기' 참고 http://hopeandlaw.org/216

1부. 레즈비언 '가족'의 법적 권리 찾기

나. 의료현장에서 LGBT의 의사결정력

토리(가족구성권연구모임)

1. 용어의 적합성-의료 친권? 의료 임종권?

원래 강의 제안 제목이 "의료 친권 및 의료 임종권"이었으나.

- 의료 친권: 친권 개념은 보통 미성년에게 성인(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개념. 그 외의 상황에서는 별반 쓰이지 않음.1)
- 의료 임종권: '임종권'이란 단어 자체가 별반 쓰이지 않음. 외국에서 통상 사용되는 "right to die"는 한국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 존엄사, 안락사, 치료거부권, 의사조력자살 등 다양하게 쓰임.

2. 맥락의 차이

- 외국에서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부터 (의료에서의) "자기 결정권" 개념이 제시(right to die 운동 시작)
- 한국의 LGBT 들은 의료 현장에서 그간 구축된 친밀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 ⇒ 만약 "LGBT 개인이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고민의 핵심이라면, "자기 결정권", "결정권자 지정권" 등으로 용어를 개념화해야 함.

(한국에서는 자기결정권 논의 자체가 시작이 10년이 채 안 되며, 아직도 거리가 먼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함)

⇒ 만약 "LGBT들의 관계들이 의료 현장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가 고민의 핵심이라면, 동성 결합 인정 등 다른 "관계 인정"을 위한 싸움과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

3. 한국의 동의서? 결정권?

¹⁾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한다(제913조). 친권을 권리라고 하여도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라고는 볼 수 없다. 자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국가적·사회적 의무이므로 결국 친권이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민법은 친권자로 미성년자의 부모와 양자의 부모(양부모)에 한정하고 있다(제909조1항). 현암사(http://www.hyeonamsa.com/)

1. 수술 동의서

[별첨2] 수술(시술ㆍ검사ㆍ마취ㆍ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

□ 수술 □ 시술	동 의 서	0
□ 검사 □ 마취	동 의 서	공정거래위원회
□ 의식하진정		표준약관 제10003호 (2009. 12. 18. 개정

1. 환자의 현재 상태 (검사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유/무/미상으로 나누어 기재)

진단명		
수술, 시술, 검사명		
주치의		
시행예정일		
기왕력 질병·상해 전력)	알레르기	
특이체질	당뇨병	
고 · 저혈압	마약사고	
복용약물	기도이상 유무	
흡연여부	출혈소인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심근경색증 등)	(기침·가래 등)	
신장질환 (부종 등)	기타	

2. 설명사항

- *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술시술검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개별적 기재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밑줄을 그어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 ① 수술(시술 · 검사)의 목적 및 효과
- ②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시술 · 검사)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 ③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9년 개정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임.

 대리인(환자의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
- □ 환자의 신체·정신적 잠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 미성년자로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명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환자 본민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이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본 동의서에 정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 _____
-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본 동의서에 첨부) 환자 (또는 대리인)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합니다.
- 수술(검사, 시술)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보듯이, 대리인 서명란이 함께 삽입되어 있음: "대리인(환자의)"
- ㅇ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로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미성년자로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이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첨부)"라고 되어 있음.

수술동의서의 효력

1. 수술동의서의 작성 주체

수술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요구에 따라 환자 및 그 보호자가 작성한다. 환자에게 행위능력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나 완전한 의사능력, 즉 자신의 결정의 의미와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친족도 작성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때, 수술동의서 작성 주체가 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 소정의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한정하여

야 할 것이다.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본다.

- ⇒ But, 법적, 윤리적으로는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라고하더라도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수없다"고 봄
- ⇒ 즉,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 서명은 불필요함. 표준약관에는 별도의 위임계약서가 있다고 하나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 ⇒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황: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미성년자로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설명 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에서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됨. 그러나 이 경우 관례상 대리인은 민법 상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으로, 엄격히 해석됨.

* <u>한국 병원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수술에 대리인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u> '병원의 과잉 보호'

2. 입원동의서

입 원 약 정 서



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남, 여) 전 화:

-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합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역시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임. 그러나 '연대보증인' 개념은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③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중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 입원보증금과 연대보증인 개념은 다를 수 있으나, 보증인이나 보증금 없이 입원이 불가한 것은 성립되지 않음
 - 의료인/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 "「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59호, 2013.6.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평보기

보건복지부 (응급의로과), 02-2023-7371

제9조(응급역료의 설명·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몇 년 전 몸이 약한 김 씨가 신장이 아파서 입원할 때였다. 어김없이 '입원 수속'을 하려면 가족의 서명이 필요했다. 가족과 가끔 만나기만 할 뿐 아예 따로 생활하는 김 씨가 입원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함께 사는 게이 오빠'였다. 그가 가족관계란에 '남편'이라고 적어줬던 것이다." (김윤나영, "레즈비언이 입원하면 게이가 '남편'이라고 써주고…", 프레시안 2012.6.21)

- ⇒ 입원 수속에 가족의 서명이 꼭 요구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 * 즉, 현재 약관으로 제시되는 한국의 동의서 양식의 경우 법적인 내용에 충실하다기 보다 의료 소송 등의 환경에 대비한 병원의 이익 보호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임
 - * 동의서 작성/병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권리를 사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

"레즈비언이 입원하면 게이가 '남편'이라고 써주고…"

뉴스

[성소수자의 의료 이용 불편기·上] 혈연 중심 보호자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김윤나영 기자 🖂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6-21 오전 10:10:01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비급여 수술비를 미리 고지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승낙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정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 은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응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의료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수 술을 할 수 있다.

4. 자기결정권-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기 결정권 개념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 의료윤리 4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
- "의료윤리 4원칙"은 과거 단순하게 의사의 판단에 의존했던 의료 결정 양상이 현대 사회에 진입하고 바뀜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들을 4가지로 축약한 것임.
- ㅇ 이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밀접하게 연관.
- '존엄사', '존엄하게 죽을 권리' 등에 대한 논쟁들이 전개된 후,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자기 결정 권한 영역들이 넓어짐. '카렌 퀼란' 사건, '낸시 크루잔' 사건, '테리 스카보' 사건 모두 이러한 권리 논쟁에서 이정표가 된 사건들임. 이들 모두 의식 상실 환자의 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에 관한 논쟁
- o 현재 중요하게 논의되는 '사전의료지시서' 역시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 결과 나온 절차, 양식이라 할 수 있음.

- 5. '자기 결정권'의 중요한 사례: 사전의료지시서
 - 외국(미국)에서는 Advance medical directives(사전의료지시서)라고 명명.
 - 이 내용: 선호하는 치료, 대리 의사 결정권자 지정 등을 담음(treatment preferences and the designation of a surrogate decision-maker)
 - 이 법적 규정: "주법 혹은 주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전 의료 지시(living will), 혹은 사전 지정의료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로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 내용에 관한 것(a written instruction, such as a living will or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recognized under State law (whether statutory or as recognized by the courts of the State),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when the individual is incapacitated.)"(42 CFR 489.100)
 - 종류로는 다음 3가지가 있음: Living Will, Health Care Proxy, Durable Power of Attorney

Giving Someone a Power of Attorney For Your Health Care

A Guide with an Easy-to-Use, Legal Form for All Adults



Prepared by
The Commission on Law and Aging
American Bar Association



Giving Someone a Power of Attorney For Your Health Care

The form in this guide is a simple version of a Health Care Advance Directive. It allows you to choose someone to make health care decisions for you if you can't. If you name a health care agent when you are healthy, you will make sure that someone you trust can make health care decisions for you if you become too ill or injured to make them yourself.

To pro	perly use the form, you must do 3 things:
1	Think carefully about the person you may choose to be your health care agent.
2	Think about what guidance you want to give your health care agent in making treatment decisions for you. Then talk about your decisions.
3	Fill out the form, A Power of Attorney for My Health Care, and follow the instructions for signing it in the presence of 2 witnesses.

6. 사전 의료 지시(Living Will)

- 1969년 운동으로 시작. 의식 문제 등으로 개인이 동의나 거부를 표시하지 못할 때 사용함
- 치료불가능한, 회복불가능한 질병,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 주치의에 의해 질병이 말기라고 판단되고, 생명유지 치료만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을 때 사용
- 특수한 서비스-진통, 항생, 수액, 영양공급, 인공심폐기, CPR 등에 대한 개인적 바람도 적시할 수 있음.

1. 뉴욕 주 사전 의료 지시(Living Will)

연명 치료로 분류되는 기계 호흡 장치, 항생제, 인공영양, 투석, 수혈, 전기쇼크치료 등에 관한 본인 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New York Living Will	Page 1 OF 3
This is an important legal document. Read it carefully and talk directs the medical treatment you are to receive in the event you medical decisions and are terminally ill, in a permanently unco conscious condition in which you are permanently unable to me	u are unable to participate in your own nscious condition, or in a minimally
I,, being directive to be followed if I become unable to make my own he physician who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my care. These in commitment to decline medical treatment under the circumstant	structions reflect my firm and settled
Health Care: If I should be in an incurable or irreversible mental or physical of recove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a terminal condition condition; or (c) a minimally conscious condition in which I am express my wishes, it is my wish that the following directions by	on; (b) a permanently unconscious in permanently unable to make decisions or
While I understand that I am not legally required to be specific condition(s) described above I feel especially strongly about	
Directions: For each choice below: 1) Cross out any of these initials next to any statement with which you agree:	that you do want AND 2) write your
I do not wan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nd Do Not Resuscitate (DNR) order (an order written in my medic administered to me).	
I do not want mechanical respiration.	
I do not want artificial nutrition and/or hydration (provis	ion of foods and fluids through tubes).
I do not want antibiotics.	
I do not want dialysis-cleaning the blood by machine	
I do not want blood transfusions/blood products	
I do not want invasive diagnostic tests - flexible tube to l	look into the stomach
I do not want anti-psychotic medication	
I do not want electric shock therapy	

2. 대만의 사전의료지시서(Living Will) 간단한 연명치료 지속 여부를 선택하고 당사자, 증인들이 서명하게 되어 있다.

제3절 대만35)

1. 사전의료지시서

호스피스 의료 사전 선택 신청서 본인 _____은/는 만약 심한 부상이나 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질 뿐 아니라 병세가 이미 사망이 불가피한 정도 까지 진전될 경우 호스피스의료 조항 제4조, 제5조와 제7조 1항 2열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선택하길 희망합니다. 1. 완화성, 지지성 의료 보호를 받기 희망합니다. 2. 임종 혹은 무생명 증상시 심폐소생술을 시행 거부합니다. (기관 내 관삽입, 체외 심장 압박, 응급 약물 투여, 심장 전기 쇼크, 심장 인공 주파수 변조, 인공 호흡 혹은 기타 응급 치료 행위 포함) 신청자 : 중인 1: 서명:_ 주민등록번호:_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주지):_ 전화번호 : 중인 2: 서명:_ 주민등록번호:_ _ ⊌ __

7. 사전 지정 의료 대리인(Health Care Directive)

- '사전의료지시'로 분류되나, 말기에 받는 연명 치료 종류를 선택하는 것(Living Will)이 아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단지 임종 무렵, 말기의 치료 뿐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경우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 1. 사전 지정 의료 대리인(Health Care Directive)
 - O Health Care Proxy,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라고도 함.
 - (의식 손실 등으로) 자신의 바램을 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사람이 의료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정해 두는 것. 지정된 사람은 개인이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가졌을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됨.
 - 의료 외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음.
 - 대리인은 당사자가 신뢰하고, 당사자를 잘 알고, 당사자의 바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함

2. 사전 지정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

○ 의료 외에 재정에 관한 권한까지 대리 행사하는 대리인. 의료에 관한 결정 권한은 사정 지정 의료 대리인과 같음.

HEALTH CARE PROXY, OR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Take the power! Create a document to make sure that the right person makes medical decisions for you when you can't make them yourself, and that everyone knows your wishes about key health care decisions that could become necessary.

Why do I need this power tool?

If you are in a serious accident or you become sick enough that you can no longer make medical decisions for yourself, you want the person you choose to be empowered to make those decisions. Otherwise the first relative who arrives at the scene might be called upon to make complicated and personal medical decisions for you. In one Lambda Legal case, Paula Long's same-sex partner was hospitalized unconscious with heart, lung and kidney failure, and staff refused to give Paula

information, instead telling her they needed contacts for blood relatives. Lambda Legal eventually put things right, but a health care proxy likely would have helped Paula avoid, or at least reduce, the emotional nightmare in the first place.

How it works: You create one or more legal documents, which may be called a health care proxy, a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or a medical power of attorney, depending on what state you live in. You are the "principal," and the person you appoint to make medical decisions for you is the "agent." The document should say that medical personnel are authorized to release medical information to your agent under the federal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Here are a few tips for creating and using a health care

The call your loved ones dread you're critically hurt or ill— often comes while they're at work, school or otherwise away from home. Most people will rush to



미국 LGBT 변호사 단체 Lambda Legal에서 발간한, 의료 관련 결정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리플렛 "Tools for Protecting Health Care Wishes" 중 일부. 사전 지정 의료 대리인(Health Care Proxy)를 언제 활용하게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3. 대리인의 조건: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연명치료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당사자가 하고 싶은지 알고 있어야 함.
 - 당사자가 죽음에 관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종교적 가치나 기준들을 숙고해야 함.
 - Living Will을 미리 숙지해 두고 있어야 함.
 - 당사자와 미리 다음의 주제에 관해 얘기해 두는 것이 좋음.
 - 만약 급작스러운 뇌졸증, 두부 손상으로 의식 회복이 어려울 때, 어떻게 치료받고 싶은지?
 - 진행성 치매나 파킨슨 등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연명치료로 삶을 연장하고 싶은지? 치료를 받고 싶으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얼마나 오래 치료받고 싶은지?
 -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인공 영양이나 수액 치료를 받고 싶은지?
 - 만약 심각하게 아파서 심장이 멈추었을 때 소생술(CPR)을 받고 싶은지? 기도삽관과 심폐기를 받고 싶은지? 얼마나 오래 받고 싶은지?
 - 대리인으로 선정되면 환자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함
- 4.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충분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족이 의료에 관한 결정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결정 이유에 대해 정리해서 쓰고 복사본을 보냄.
 - 의료에 대해 대리인에게 우선하고 가족들의 개입은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림
 - ㅇ 서면 내용을 주치의에게 복사본으로 전달
 - 잘 준비된 Living Will을 준비
 - ㅇ 모든 불명확한 상황들에 대리인이 책임지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서면에 명시
 - "내 대리인이 어떻게, 언제 나의 Living Will을 적용할 것인지를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무리 뉴욕주 스의료결정위임장> : 번역 토리

Health Care Proxy

Appointing Your Health Care Agent in New York State

뉴욕주에서 의료결정대라인을 선임하기

The New York Health Care Proxy Law alkins you to appoint someone you trust — for example, a family member or close field—to make health care decicions for you if you lose the ability to make decicions yourself by appointing a health care agent you can make sure that health care provides follow your wishes your medical condition follow your wishes Your agent can also decide how your wishes apply as your medical condition changes. Hoppials, decicions and other health care provides must follow your agents decicions as if they were your own. You may give the person you select as your health care decicions or only certain ones. You may also give your agent instructions that he or she has to follow. This form can also be used to document your wishes or instructions with regard to organ and/or tissue donation.

뉴욕 Heath Care Proxy 법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스스로 결정내릴 능력을 상실했을 때 당신을 위해 보건이죠 의사결점을 내릴 누군가를 지정하는 것을 어떻합니다. 의료결정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의사가 당신의 의사를 보다 잘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대리인은 의료 환경이 변화했을 때 당신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의사 및 다른 의료 자공자들은 대리인의 결정을 당신의 결정처럼 때라야 합니다. 당신은 의료결정대리인의 관한을 적게 줄지 아니면 많이 줄지 당신이 원하는 만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리인이 모든 종류의 보건이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할지 아니면 특정 종류인 내릴 수 있습니다. 된 서류는 당신의 의형이 서류화된 것으로서나 혹은 장기나 조직기를 관한 지칭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bout the Health Care Proxy Form

의료결정대리인 위임서

This is an important legal document. Before signing, you should understand the following facts:

본 사람은 중요한 법적 사류입니다. 서명하시기 전 당신은 다음의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This form gives the person you choose as your agent the authority to make all health care decisions for you including the decision to remove or provide life-sustaining treatment, unless you say otherwise in this form. "Health care" means any treatment, service or procedure to diagnose or treat your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본 위임사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 보건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줍니다. 당신이 본 위임사에 달리 연급하지 않는 한 면영지료를 처공하거나 지거하는 결정을 포함합니다. '보건의로'는 어떤 치료나 서비스 혹은 당신의 신제적 정신적 조건을 진단 치료하기 위한 절자를 의미합니다. Unless your agent reasonably knows your wishes about anticial numbon and hydrabon (nounishment and water provided by a feeding tube or intravenous line), he or she will not be allowed to refuse or consent to those measures for you. 당신의 대리인이 인공 영양이나 수액 공급에 관한 당신의 의행을 합리적으로 얇지 않는 한 그/그녀가 인공 영양 수액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하락되지 않습니다. Your agent will start making decisions for you when your doctor determines that you are not able to make health care decisions for yourself. 당신의 다리면은 당신의 주지의가 당신이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부터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4. You may write on this form examples of the types of treatments that you would not desire and/or those treatments that you want to make sure you receive. The instructions may be used to limit the decision-making power of the agent. Your agent must follow your instructions when making decisions for you.

당신은 당신이 바라지 않는 특성 중류의 지료와 받길 바라는 특정 종류의 지료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다리인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대리인은 당신을 위해 의사결정할 때 당신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You do not need a lawyer to fill out this form

본 위임서를 작성하는 데에 변호사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You may choose any adult (18 years of age or older), including a family member or close friend, to be your agent. If you select a doctor as your agent, he or she will have to choose between acting as your agent or as your attending doctor because a doctor cannot do both at the same time. Also, if you are a patient or resident of a hospital, nursing home or mental hygiene facility, there are special restrictions about naming someone who works for that facility as your agent. Ask staff at the facility to explain those restrictions.

당신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포함한 성인대와서 혹은 그 이상을 다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약 당신이 의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그/그녀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지 아니면 주지의의 역할을 수행할지 선택하여 합니다 의사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병원이나 긴호원, 정신위생병동에 있는 환자거나 거주지일 경우 병동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에 독*발*한 저장이 다릅니다. 어떤 저장이 있는지 병동 스템에게 물어보십시오.

7. Before appointing someone as your health care agent, discuss it with him or her to make sure that he or she is willing to act as your agent. Tell the person you choose that he or she will be your health care agent. Discuss your health care wishes and this form with your agent. Be sure to give him or her a signed copy. Your agent cannot be sued for health care decisions made in good faith.

K

누군가를 의료결정다리인으로 선임하기 전에 그/그녀와 상으하여 그/그녀가 당신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그/그녀가 의료결정대리인이 될 가라는 점을 알리십시오 당신의 의료 관련 의행과 본 위임서를 당신의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그/그녀에게 사용한 사원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좋은 신병으로 평한 의사 결정 때문에 당신의 대리인이 소송당하지 않이야 합니다.

8. If you have named your spouse as your health care agent and you later become divorced or legally separated, your former spouse can no longer be your agent by law, unless you state otherwise. If you would like your former spouse to remain your agent, you may note this on your current form and date it or complete a new form naming your former spouse.

> 만약 당신의 배우자를 의료결정대답인으로 선임하고 이후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별거하게 되었을 경우 전 배우자는 당신이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법적으로 당신의 대리인 자격을 갖지 않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전 배우자를 다리인으로 남겨놓고 싶다면 한재 위엄장에 이를 기재하고 날짜를 함께 작거나 전 배우자를 기재한 새로운 위엄장을 완성하십시오

Even though you have signed this form, you have the right to make health care decisions for yourself as long as you are able to do so, and treatment cannot be given to you or stopped if you object, nor will your agent have any power to object.

본 위암증에 서명했더라도 당신이 결정능력이 있는 한 당신 자신을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대하거나 대리인이 반대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새로이 치료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You may cancel the authority given to your agent by telling him or her or your health care provider orally or in writing.

당신은 당신의 대리인에게 준 권한을 그/그녀 혹은 당신의 의사에게 구도로 혹은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Appointing a health care agent is volumary. No one can require you to appoint one

대리인 선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You may express your wisnes or instructions regarding organ and/or tissue donation on this form.

당신은 본 유염장에 잠기 혹은 조직 기중 관련 의형이나 지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사전 지정 의료 대리인(Health Care Proxy) 을 결정하는 법적 문서--의료결정위임장(번역문)

대리인의 법적 권한, 당 사자의 법적 권한, 대리인 의 조건과 제한 등이 상세 하게 설명되어 있음.

- * 대만도 유사하게 의료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 아래는 대만의 의료위임대리인위임장이다. 위임대리인을 후보 셋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2. 의료의사결정대리인 위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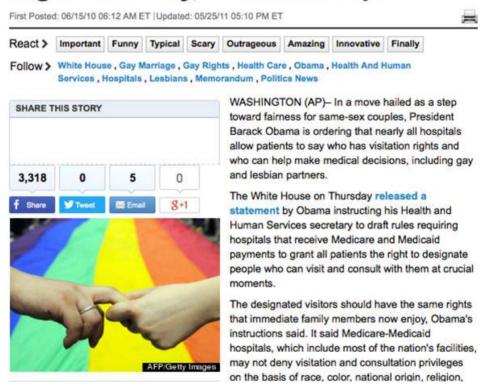
و	의료 위임 대리인 /	사전 신청서	
걸려 의사의 진단에 의		가고 판단될 뿐 아니 지원 의사를 밝힐 구정에 의거하여'호	니라 병세가 이미 수 없을 때 위임 :스피스의료 선택
Control (explainment) (explainment)	_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8. 병원 방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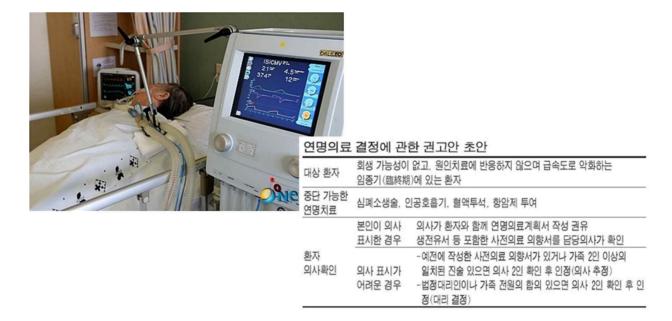
- 1.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 누가 방문할 수 있는지 권리 부여
- 2.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름. 보건의료 관련 대리인(Health Care Agent)이 법적으로 정의된 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있든 없든 대리인의 방문권이 가능. (방문 특권)
- 3. 오바마가 2010년 6월 15일 LGBT 병원 방문권을 보장하는 행정명령(Presidential Memorandum)을 내림. 이 규칙 제정으로 medicare와 계약한 병원은
 - 환자들에게 방문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하고(domestic partner 포함),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방문권을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 모든 방문자들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평등한 방문권을 지녀야 한다.

Obama Orders Hospital Visitation Rights For Gay, Lesbian Couples



9. 한국의 사전 의료지시서 & 입법경향

- 1. 그 전에도 생명윤리 진영에서 관련 논의가 되었으나, 2010년 김할머니 사건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이 논의 중임.
- 2. 18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내용은 전부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절차에는 동의하나 대리인에 관해서 엄격하게 개념화하거나 따로 특정화하지 않음.
 - 신상진 외 22명(2009): 존엄사법안
 - ⇒ 대리인 개념 따로 특정하지 않음
 - 김세연 외 28명(2009):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인에 의한 의사 추정 금지



- * 한국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사전의료지시서
 - 대리인 위임 관련 문서는 전무하며, 사전의료지시(Living Will)의 내용만을 담은 지시서들만 존재.
 - 서울대병원: 적극적 연명조치/보존요법 등으로 나누어서 치료 동의를 물으며, 설명을 들은 가 족/환자 대리인/보호자 모두의 서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와 관련하여 환자분이 변경 혹은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합니다.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침습(侵襲)적, 적극적 연명치료	서명:	서명:	서명:
 심폐소생술 (심장마사지, 강심제, 제세동,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 후에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2.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액투석 (신기능 저하시 필요한 혈액투석은 일부 환자 의 경우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큰 고통이 따르지 않으나, 침습적인 검사 및 처치	서명:	서명:	서명: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완화 처치	서명:	서명:	서명:

본인(서명:)은 (현재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의	· 예후, 그리고 이 서스
에 포함된 치료들의	直对의 2	P작용들에 :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상의 내용	이 타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고 표기한 대로 법적
인 효력을 유지하기	[를 희망합	니다.		
만약, 환자 본인	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소 환자	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	가 환자의	결정을 대신합니	4.
<설명의사>				
		(서명)		
<설명에 참여한 의	코인>			
		(서명)		4
(서명)				
<설명받은 환자 기	0.00		e al red	N/2
(서명)	(서명))] =	(사명)
(10)	(서명)		(사명)
(서명)	0.0000	(A	- 5/46	
<설명시간>				
서 _웹_	2 AM	PM _:_	~ AM/PM _	-
<설명장소>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			
(환자명:)의 (관계:):	(서명)	
주민등목번호:				
学 全:				
전화: - 보호가				
<보호자> (환자명:)의 (관계:	100	(사명)	
주민등목번호:	M (CAL	1.	()	
李 杰:				
전화:				
<환자가 직접 서명	하기 못하는	사유>		
의사 기입:				-
의사:	(서명)			

○ 세브란스병원: 각종 의료적 처치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물으며,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서명을 필요로 함

연명치료	보기 요청서	
등록번호 :환자 성명 :	M/F 세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		
주치의사/시술의사 : 날짜	: 년 월	
)은 의식이 명료한 만 20세 이상 게 위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포기를 요청	
위 환자가 소생 불가능하거나, 죽음	이 임박한 말기 상황이거나, 생명 연장을	
한 인위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지	라도 다음의 치료, 검사 및 심폐소생술 등	
l 의료적 처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	청합니다.	
2. 다음에 선택한 치료와 검사의 포	기를 요청합니다.	
□ 중환자실 이실	□ 항생제 사용	
□ 기도 삼판	수형	
□ 인공 호흡기 적용	□ 청매 영양 주사(TPN)	
□ 제세동술을 포함한 일체의 전기적 4	성장 자국 🗌 경장 영양(Tube Feeding)	
□ 인공심박조윤기의 삼입 □ 혈액 검사		
□ 숭압제, 강심제 사용	□ 무석	
□ 이미 중합재, 강심제를 사용하고 있 용량 증가	는 경우, 다기타	
□ 항꾸성맥약 사용	□ 이사 모두	
	(참고) 자세한 용어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의사의 충분한 설명 하과 결과를 이해하였습니다. 단, 결정이 내려진 이되기를 원합니다.	
	환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관계 주민등록번	t
	전화 휴대폰	
	주소	
	설명 의사	(서명 또는 인)

* 보호자

○ 의료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의료법상 기록열람 범위를

"제₂₁조(기록 열람 등)

-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 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로 지정해두고 있어 환자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친족 외에 기록열람이 불가능함

10. 성년후견제

1. 2011년 3월 7일 개정 민법으로 반영

민법 제947조의 2(피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 등)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 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 여 동의할 수 있다"(제3항)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대학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군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 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

- 2. 장애인 운동의 자기결정권 운동 결과로, 기존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가 보호기능은 미약 하나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음을 개선키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 는 방향으로 입법된 것임.
- 3. 연명치료의 중단 또는 거부를 사전의료지시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칭, '피성년후견인등 의 신상보호 및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최종 입법 제안에서는 제외. 그러나 명시 해놓지 않더라도 피성년후견인 의료행위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대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음. ⇒ 사전 지정 의료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활용 절차: 가정법원의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함
 - 가정법원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결정권을 부여받은 성년후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보 충적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가정법원이 신상결정에 관한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당연히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 ●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 중하여야 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도,

- 실제 피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결정 능력이 있다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에게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하였더라도 개정민법 제947조의2 제1항의 취지(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결정 이 존중되어야 한다.
- 아직 성년후견제가 시행 초기라 동성 파트너 간의 판례가 있지는 않음. 그러나 생명윤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제도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음. 동성 커플 혹은 혈연가족과 떨어져지내는 LGBT들 또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부. 수다방: 레즈비언 직장 탐구생활

10인 10색 레즈비언 패널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이야기

연두/교사

김쑤/회사원

은정아/재무설계사

빈/프랜차이즈 지점 점장

미스티/파티시에

조나단/회사원-홍보팀

종종/간호사

디아나/편집자

유리/댄서

조제/공인중개사

로마/전직 안경사

히로/회사원-게임개발회사

[&]quot;레즈비언으로 끝까지 잘 살아보세!"

1. 어떤 계기로 당신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당신의 레즈비언 정체성과 직업 선택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성적소수자로 살아가든, 아니면 이성애자로 살아가든 직업, 혹은 직무라는 것은 은퇴시점까지를 나와 함께 해야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를 고른다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본적 부분, 즉 내가 자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을 수 있게 언제나 자극이 되고 니즈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정보가 빨리 들어오는 쪽의 일을 선택해야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의 정체성으로 인해 후에 가족과의 연관성이 끊기거나 하였을 시 스스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도움이 많이될 수 있을 지가 선택의 관건이었습니다.

* *

편집자는 책을 만드는 부분의 '감독' 역할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책의 꼴을 기획하고, 저자를 섭외하고, 디자이너와 디자인을 고민하고, 홍보와 마케팅까지 챙겨야 하지요. 업무량도 많고 사소한 잡무도 넘치지만전 이 일이 잘 맞고 또 애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일한 지 8년 정도 됐고, 아직 직장에서 커밍아웃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게 될 지도 미지수이고요. 만약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이 밝혀진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외부에서 저를 레즈비언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 *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사범대 붐이 불었어요. 남 녀불문, 고용안정성이 낮아지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이유였지요. 특히 지방/그럭저럭 공부 잘하고/넉넉지 못한 집에서 태어난 /여학생들의 경우, 거의 교사나 간호사가 될 것을 집에서 강요받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로 사범대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결국에 다른 진로 선택의 가능성을 접고 임용고시를 본건 저의 선택이었죠. 가르치는 것이나 지금 전공 과목을 정말 뼛속깊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이유였죠. 그 당시 사귀게 된 애인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영향을 줬어요. 애인은 회사원인데,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

던 거죠.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라 는 것도 고려했었구요.

* *

저는 현재 케익 전문점에서 파티시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홈베이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중학생 무렵부터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보람찼고,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거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미래에 내가 유명한 파티시에가 되어 여러 다양한 손님들에게 디저트를 대접했을 때 이 맛있는 디저트를 만든 사람이 레즈비언이라는 충격과 공포를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농담 같지만 진심입니다. 그래서 호모포비아들이 내 요리를 먹지않고는 못 배기는 정도로 내가 잘난 파티시에가 되어서호모포비아들의 그 막연한 공포심을 없애는 일을 하고싶었습니다.

누구나 먹으며 살아가고, 먹지 않으며 살 수는 없기에 가장 사람 그 자체와 밀접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디저트와 케익 같은 달콤한 음식이 주는 특별한 행복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이 퀴어들에게 더더욱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 *

회사에서 홍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대리예요. 맡고 있는 업무는 사보와 온라인 (홈페이지, 쇼핑몰, SNS 운영)그리고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인문계열 전공을 졸업한 후 공부를 계속할지, 사회에 나갈지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다가 아니니 학교 밖에서 삶을 공부해보자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취업을 결심했어요. 이력서를 넣은 많은 곳 중 저를 받아주는 회사에들어갔지요. 현재 맡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 인상만 있었을 때라서, 그 당시 제가 능동적으로 제 정체성까지 고려하며 직업을 선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을 보고 분석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 어하는 제 성향이 업무 특성과 잘 맞았어요. 기획해서

1. 어떤 계기로 당신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본인의 레즈비언 정체성과 직업 선택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는 것도 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또 사회공헌사업 업무를 하는데 제 인권감수성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 *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취업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바로 복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텐 이게 진짜 진짜 중요했어요.

친구들처럼 정장(특히 치마!!)를 입기도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게 너무 싫어서 캐주얼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고르다보니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

운동강사, 무용수, 번역가, 영어강사 등 잡다한 일을 하며 살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용'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칸 공연예술그룹에 소속된 아프리칸 댄서이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재즈나 힙합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용수가 된계기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재미있게도 우리 상담소가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는 2006년, 대학원에 입학함과 동시에 상담소의 간사를 맡아 반 년 가량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있던 시기였죠.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상담소와 학교 에서 가까운 고시원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고, 상담 업무가 워낙 고되고 마음이 가라앉는 일이다보니 한때 심리상담가를 꿈꾸던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레즈비언 정체 성 때문에 친구들과 단 한 번도 문제를 겪은 일이 없었 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단단해서 일생을 명랑쾌활하게만 살아왔는데, 레즈비언상담이 내리누르 는 무게란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했습니다. 눈만 뜨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 르렀지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우울증이라니요, 수 화기 건너, 컴퓨터 모니터 너머에 있는 내담자들만 겪 는 건 줄 알았던 우울증이 나를 이렇게 한 순간 뒤덮다 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상담을 받아라, 약을 먹어라'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상담소 동료였던 현재의 애 인이 지나가듯 한 마디 해주었습니다. "태보라는 거 한 번 해보지 않을래?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 게 시작한 운동이 저를 구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운동 을 하다가 구토가 치밀어오를 정도로 체력이 좋지 않았 지만 신기하게도 운동을 하는 순간에는 머릿속에 아무 런 잡생각이 들지 않고 기분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운동에 점점 빠져들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 걱정하던 상담소 활동가들의 배려로 두 달 정도 활동을 접고 운 동에만 매달렀어요. 헬스장에서는 '이렇게 운동하다간 죽는다'며 집에 가라고 할 정도였죠. 어쩌다보니 운동강 사 자격증을 두 개나 따게 되었고 곧장 강사생활을 시 작하면서 상담소 활동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품어오던 댄서의 길에 발을 담그 게 되었고, 비전공자를 위한 무용전문과정을 2년 가량 밟고 나서 공연료를 받고 무대에 오르는 프로무용수가 되었던 거예요. 번역가가 되기 위해 들였던 3년 가량의 기간을 빼고 나면 지금껏 계속 무용수로 살아왔습니다. 번역이나 영어강의는 춤추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병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울했던 당시에 는 상담소를 포함한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지만, 돌아 보니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었더라면 무용수가 되지 못할 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 *

저희 아버지 권유가 생각나기도 했었고 부동산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조금씩 접해보던 거라 관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레즈비언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

저는 어릴 적부터-그러니까 아주 꼬꼬마 시절부터요. 초등학교(그땐 국민학교였음) 4학년 무렵에 같은 학원에 다니던 K를 보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기억도 있네요- 여튼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 어릴 적부터 확실한 인식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1. 어떤 계기로 당신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당신의 레즈비언 정체성과 직업 선택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세상이 바뀌기도 했고, 인터넷의 영향으로 자기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들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어서 궁정적인 자아를 형성시켜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땐(고등학교 때까지만해도) 인터넷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때이고 모든 것은 제한된 활자물을 통해 정보를 습득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티부'인 저로서는 일반 회사에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최소한 내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이어졌습니다.(지금은 티부이건 아니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을 할 무렵,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안경광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 안경사로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 *

저희 회사 거래처에 계신 친척의 권유로 들어오게됐 으며 정체성과 직업에 관한 연관성은 전혀 없네요;

저는 제가 이쪽이라고 해서 직업을 특별히 생각한다 거나 한 적은 없는거 같아요. 직업이라는 게 가리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중에 최선의 것이었고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이쪽이라는게 특별한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직업에 관련해서도 그냥 제 일상이라고만 생각해왔거든요.

* *

아르바이트로 시작 했었는데 그때는 딱히 정체성과 관련지어 선택하진 않았어요. 그냥 집 근처. 집에서 슬슬 걸으면 10분 정도의 짧은 거리라.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생활비 벌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라. 물론 제가 선택하긴 했지만 반강제(?) 직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냥 매장에서 제일 오래 일해서… 일을 선택할 때 꼭 제 정체성을 고려해서 고르진 않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게 일순위고.

거기서 일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아마 제가 일코[일반인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차별 받는 일이 없어서 더욱 일과 제 정체성을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이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으로 가 고 싶어요.

이건 왠지 어려울 거 같아서 제가 회사를 만드는 걸 로…

2. 당신의 직업이 이래서 좋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이를테면 결혼하지 않은 (비혼) 여성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 레즈비언 정체성과 관련해 "이건 진짜 좋아"라고 느꼈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칼퇴근! 학교의 특성상 5시에만 퇴근해도 '굉장히 늦게 퇴근하시네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학생들이 없는학교는 으스스하고 무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업무는최대한 공강시간에 짬을 내서 처리해버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칼퇴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직장보다는제 여가생활을 더 중시하는 인간인지라 이 점이 엄청난대력으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비하면 회식이 많지 않고 회식을 해도 대체로 7시 이전에 끝난다는점도 좋아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조직 전체로 보면장단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매력이네요.

* *

제 직업이 좋다고 느꼈던건 제가 실장으로 일할 때정말 괜찮은 매물이 나왔을 때 그걸 살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 부동산의 수익이이정도 나니까 이가격대에 사면 이건 잘사는 거구나 혹은 앞으로 이곳이 이런 발전가능성이 있구나라는걸 빨리 알아차리고 살수 있었을 때 였습니다. 레즈비언 정체성과 관련하여서는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레즈비언으로서 저번 여름학교때처럼 제가 아는 지식이 다른 레즈비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것에 대한 기쁨이랄까 그런 것이 좋았어요.

* *

특별한 레즈비언 정체성과의 관련이나 싱글라이프로 서의 좋은 점이라는 것은 없지만 좀 편하다 싶은 건 제 가 일하는 곳의 업종 같은 경우는 주로 작은 회사들간 에 통화로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는 여직원들 이 많이 합니다.

여성의 비율이 많다보니 나이가 있으신 미혼의 여성 분들이 많고 30,40대 분들도 싱글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혼의 압박이랄까, 왜 나이가 찼는데 남자를 안만나지 랄까 하는 생각들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편이네요.

* *

먼저 근무 환경 면에서, 근무시간이 꽤 규칙적인 편이라 저녁 7시 이후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게 제게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둘째로, 제 성향과

관심사가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또 사소하게 제가 지지하는 분야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여성 신문이나 여성영화제 협찬 제안이 들어왔을때, 강력하게 실무자로서 어필을 할 수 있었어요.

* *

처음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적성만 생각했어요. 책을 좋아하고, 글쓰는 직업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해보니 제 환상과는 다른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레즈비언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생각지 못한 유리한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분야에 여성들이 많은 직업이고 미혼, 비혼 여성의 비중도 타 직종에 비해서 높으니까요. 제가 딱히 두드러지거나 독특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또 아주 고지식하거나 머리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의비율도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연애 사건도 꽤 발생했던 편이에요.ㅎ

* *

기쁜 자리에 케익을 선물하면 참 의미있는 자리가 됩니다. 케익을 자르고, 나눠먹으며 그 달콤함과 폭신함을 그 자리의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을 참 사랑합니다.

후에는 레즈비언 커플 결혼식때 웨딩케익을 만들어주는 레즈비언 전용(!!) 파티시에가 되어 케익을 만들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딩케익은 외국에서는 흔한 문화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헤테로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 까짓, 레즈비언들이 더 앞서서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네요.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문화지만 8~

* *

우리 레즈비언들은 아직까지는 결혼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성애자 커플과는 달리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어 항상 무언가를 할 때에도 공동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나눌 수 있는 그들과 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하 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성애자 부부들과 2. 본인의 직업이 이래서 좋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이를테면 결혼하지 않은 (비혼) 여성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 레즈비언 정체성과 관련해 "이건 진짜 좋아"라고 느꼈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달리 자녀리스크라는 것이 없습니다. 입양을 하거나 상 호합의 하에 아이를 만들지 않는 한 그렇죠. 결혼이라 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리 별 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생김으로써 발 생되는 그로 인한 지출이 없다는 것은 한아이 양육비가 2억이 넘는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나 반대로 얘기하면 법적인 책임 외에도 한 부부의 유대를 형성시켜주는 뿌리가 없음은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었 을 시의 노후 리스크는 전부 본인 자신이 온전히 떠안 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온전히 내가 가져가야할 리스크를 금전적인 부분만이라도 정확 히 인지하고, 그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 을 상기시킬 때마다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사무업종에 비해 약간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 *

앞에서도 말했듯이 복장이 캐주얼하면서 업무 분위기도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또 회사 특성 상 상명하복 분위기도 거의 없고 여성 차별은 볼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자유롭다보니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지적이 없어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까진 대충 넘길만 합니다. :P

* *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안경사란 직업은 안경을 팔고, 시력 검사를 하고, 고객의 필요에 따른 안경을 조제하고, 마지막 단계가 고객이 주문한 안경이 잘 맞도록 피팅(Fitting)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의도치 않게 고객과 눈맞춤도 하게 되고 얼굴이나 귀, 때로는 머리카락도 (조심스럽게)만지게 됩니다. 맘에 드는 여자 사람을 앞에 앉혀 두고 피팅해주다 보면 좋은 기분이 듭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또 지금은 안경일을 하고 있지 않고 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육아를 하지 않고, 널널하게 살림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비혼 여성으로서의 시간을 제가 원하는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대부분의 이성애자 여자의 일상과 비교하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만난 결혼한 이성애자 여자들은 육아와 살림에 때론 돈까지 벌면서 그모든 일을 해내더군요. 결정적으로 자유로운 저를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 *

이게 레즈비언 정체성과 비혼여성으로서 좋은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출근할 때 화장을 안 해도 되고치마를 입거나 차려 입지 않아도 된다는 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제 휴가나 휴무를 정할때나 퇴근후 사장님이랑같이 일이야기를 해야할때 종종 물어봐요. '같이 사는친구랑 휴가 날짜 맞춰서 이야기 해달라, 저녁에 친구랑 약속 있냐' 이런 말들.

사장님한테는 친구랑 산다고 이야기 했는데(현재 애인과 동거중)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친구이상이라는 느낌은 받으시나 봐요.

회식하고 집에 늦게 가면 '친구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저녁에 다 같이 밥 먹자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보면 아……모르시나 싶기도 하고.

* *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새벽에 연습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기 때문이지요. 결혼한 여성이라면 가족의 속박을 받아 새벽연습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파트너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혼 여부를 떠나 미안한 일이긴 하지요. 그래서 애인은 제가 공연하는 걸 정말 많이 지지하고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해 하기도 한답니다.

3. 직장에 다니면서(혹은 일을 하면서) 레즈비언으로서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 순간들이 왜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안경 일을 할 때 사장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여성으로서 고객을 대하는 직업이니 화장을 하는 건 어떠냐고 권유아닌 강요를 하신 적이 있었고 저도 그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앞으로도 화장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필요하다면 화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화장술이 많이 부족해서하지 못하지만은!) 또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제가 티부인 관계로 특히나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은 저를 "남자인 줄 알았다"고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 보고 제가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 하다가, 남자가 있는 목젖이었나 확인해 봤다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릴 적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웃으면서 넘긴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속으로 이렇게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겠다고!'

살아가는 경험이 쌓이다보니 이런 불쾌한 경험에 대해 마냥 속상해하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긴합니다만 제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민감하고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 *

이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레즈비언 분들이 느낄 것 같은데요. 팀원이나 친한 동료가 남친, 결혼 얘기를 꺼 낼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대충 무마가 가능한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집요해지는 느낌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더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할지…lol

이 와중에 직장동료들 중에서도 말은 안하지만 레즈비언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홋

* *

사람들의 시선이나 궁금증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연애도 안 하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여자처럼 꾸미지 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직장 동료나 상사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

나에게 그런 모습들을 강요하고, 모두가 당연히 "여 자애들은 가르쳐줘봤자 소용없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이 일 안 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싫습니다. 나는 제과 업계에 큰 포부를 갖고 뛰어들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또 거기서 심지어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면! 그들이 어떤 반응일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파티시에라는 직업이 달콤하고 부드럽고 재밌어 보이지만 만드는 케익만 달뿐 일은 달지 않습니다 ^^;;; 여자들 비중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도중에 그만둡니다.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남자 만나서 애도 안 낳을 건데 나를 보는 모두가 나에게서 그런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니 거북하고 불편했었습니다.

* *

제 직장 동료(동기, 선배, 후배)들은 대부분이 2~30대 여성으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내 독신주의자도 찾아보기 힘들며 주위 사람들 중 연애를 안 하고 있거나 혹은 결혼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저 같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개팅 제안도많이 들어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거절하게되면 왜 연애를 안하냐 부터 시작해서 남자한테 관심이없느냐, 그래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게 여자 행복인거다. 로 말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를 해야 관심을 덜 받게 되고요. 문제는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계속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다보면 까먹게 되고 다음 날 다른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들었던 상대방은 어제 얘기와 다르지 않냐며 캐묻고.

직장 내에서 커밍아웃하면 해결 될 일 아닐까, 잠깐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 뒷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 니다.

의료, 병원 쪽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간호사집 단 안에서 동성애 담론은 형성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들 안에서 동성애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거죠. 커밍 아웃을 한다고 해도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애써 기 억하지 않을겁니다. 드러내 놓고 싫어하진 않겠지만 그 러면서도 계속 불편해 하겠지요.

저는 간호사 레즈비언들이 꽤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간호학과 친구, 간호사 친구구하는 글을 많이 봤으니까요.

3. 직장에 다니면서(혹은 일을 하면서) 레즈비언으로서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 순간들이 왜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큰 병원에서도, 이직한 작은 병원에서도, 실습한 병원에서도, 대학 안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동기들과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레즈비언에 관한 이야기는 나눠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당연히 게이다가 돌아간적도 없어요.

병원의 폐쇄적이 특징이 더욱 우리를 가둬 놓는 것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직장 내에서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때는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직장의 폐쇄적 이고 보수적인 성격이 드러 날 때. 그래서 제 자신을 더욱 꽁꽁 숨겨야 할 때.

* *

어른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다보니 고지식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예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자체를 입밖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레즈비언 분들도 저희 부동산에 오실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부동산차려서 해보고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타격이 될수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게 알려지는 게 불편해요. 앞으로는 조심하려고 합니다.

소문이 너무 빨라서요. 장사를 해야 하는데 다른 공 인중개사분들에게 레즈비언인 게 알려지면 큰일나겠더 라구요. 제가 그 지역에서 제일 어리거든요.

* *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볼 때. 애인이 있다거나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 '꼭' 남 자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 할 때는 '나도 어디가서 이렇게 물어보지 말아야지' 해요. 그리고 소개팅을 시켜 주겠으니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그냥 홧김에 말 해버릴까보다. 생각만 하지요.

그리고 제 앞에서 레즈/호모 발언들을 할 때면 화가 나요. 그래서 진짜 살짝 화를 내요.

* *

보수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요. 아무 래도 여교사=일등신부감(토할 것 같군요…)이라는 인식

이 있어서. 저를 결혼시켜 주고 싶어하는 아저씨, 아주머니 선생님들(;;)의 오지랖(!)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수업을 할 때 동성애 관련 주제가 나오면 애들이 편견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친구를 '게이다'라고 놀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정말 열받죠. 어떨 땐 농담처럼 어떨 땐 정색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러지 마라고 하기도 했지만, 성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아닌 이상 그런 이야기를 터놓고제대로 하기는 힘들어요.

* *

사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친근감의 척도로 여겨지는 것이 불편해요. "어제 뭐 했어? 주말에 뭐 했어?" 같은 질문에 답하기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퀴어퍼레이드에 갔다거나 아이다호 행사에 갔다고 답할 수 없잖아요. SNS도 회사 사람들과 공유하는 계정에는 주의해서 올 려야 하고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조로 동성애 관련이슈가 나왔을 때, 비하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요. 그 경우에 저는 상대방에게 인간적으로 실망스럽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지죠.

4. 당신의 일과 관련하여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내년 회사 사업계획 세운 기획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 야겠다는 단기적인 계획만 있어요. 일 외적으로 동화도 쓰고 인권 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부분 에 대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도 일에서의 제 커리어 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오래 일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몸도 힘들 고, 사실 한국에서 간호사로 계속 벌어먹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학 공부를 더 해 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의료윤리(간호윤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 바탕입 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일을 하다보면 존엄성은 둘째치 고 인권 자체가 무시되고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정상 아니면 비정상. 비정상적인 건 다시 정 상적인 것으로 돌려 놓아야 함! 이 논의를 환자 건강상 태에만 선택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새롭게 배우는 학생들은 좀 더 넓은 범 위에서 생각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가 많아지고 중개시장이 좁아지 게 되면 저도 부동산중개가 아닌 경매나 다른 길을 알 아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재건축 이나 재개발 상가 등에 노하우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부동산대학원에 한번 더 들어가서 정말 심도 있게 배워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누리 고 싶습니다.

전 아직까지는 재무설계일을 하면서 영업도 함께 뛰 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는 영업도 함께 병행해야 은 분위기라 조심스러운데, 저는 애초 이 길로 들어설

파트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며 공적으로는 이때에 한 지점의 교육을 맡는 교육팀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 표이자 계획입니다. 이 외에 사적으로는 저의 직업을 살려 여러 여성분들이 본인의 월급관리와 더불어 더 나 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조언을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 *

앞으로 기술을 배우려고 해요. 이 일을 나이 들고 늙어서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도 즐 겁게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학원도 등록했어요. 배우려는 기술은 어려서 부터 재밌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라서 매 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지테리언 디저트, 친환경, 무항생제 재료를 사용하 여 인위적이지 않은 디저트와 케익을 파는 가게를 열고 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비건들도 똑같이 디저트의 행복을 느꼈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직업은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입사해서 노 력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지금 이 직업을 끝까지 가지고 가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적정의 돈을 모 을 때까지는 이일을 할 것 같습니다.

나이에 연관되지 않고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식이 많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 닐 수 있거든요.

음… 사실 제가 교사 대표로 패널로 참석하는 것 같 합니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신입사원 교육전담 때와는 달리 정년을 채우고 나갈 생각이 없어졌어요.

4. 당신의 일과 관련하여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빠르면 내후년 초나, 늦어도 5년 안에 이 길을 접고 다른 길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 *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들고 부수고 찢고 그리고 하는 수작업을 좋아해서 제가 남을 알려 줄수 있는 수준만 된다면 같이 모여서 강의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작업한 걸 전시회을 열어도 좋을 거 같고 그렇게 살면서 특별한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고 싶어요.

5. 당신의 직업이 한국 사회 레즈비언 공통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제가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 하면서 상담소 활 도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 세미나부터 시작 동도 하고 후원도 하면, 그게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 _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현실적인 이상이 되어야 하 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

니까. 연락주세요.^^

레즈비언이라서, 레즈비언이기에 가능한 것들을 끊임 없이 만들고 싶습니다. 달걀과 우유를 우리에게 내어주 는 소와 닭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케익을 먹는 사람들이 한 명씩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첨가제로 물 든 케익을 먹고 배가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 다. 먹는 것은 그 사람 자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레즈비언들이 즐겁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행복해졌 으면 좋겠습니다.

* *

앞으로 트레이닝을 지속해서 저만의 춤의 세계가 더 욱 확고해지면 여성주의나 레즈비언과 관련된 내용의 무용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싶어요. 작품성 있는 공연을 올려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레즈비언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바래봅니다.

병원 자체에 동성애차별적인 시선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레즈비언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보면서 불편했었던 점(여성이라서가 아닌 레즈 비언이라서 불편했던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동성파트너쉽이 병원에서 인정된다면 임종이나 각종 동 의(수술, 검사, 비급여항목 등) 등을 받을 수 있겠지요.

사실 이 부분은 커밍아웃 고민과도 연관이 있는데, 레즈비언 관련 주제 도서들을 활발하게 발굴하고 싶은 욕망이 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고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정직할 수 는 없더라도 조금씩이나마 책을 통해 레즈비언이슈나

특별한 도움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수있는 건 없는거 같네요. 잘 생각나는 것도 없고…

습니다. 그런 자체적인 출판라인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

굳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비슷한 업종이나 사무직 에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일까나

* *

여성과 성소수자 프랜들리한 매체에서 광고나 협찬 제안이 왔을 때, 밀어줄 수 있지요.

실제 집행이 되고 안 되고는 윗 결정권자에게 달렸지 만요.

* *

제가 일을 하면서 좋은 기회가 생기면 여러 레즈비언 분들이나 단체나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 각하지만 명확한 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이 한국사회와 레즈비언 공 동체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잘 꾸려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레즈비언공동체 에 대한 도움?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서 마치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떤 곳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은 느낌.

도움이 안되면 안될 거 같은 느낌이라(제가 너무 부 정적인가요:)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좋을까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싶 지금도 고민이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비정기 후원 계좌

외환 630-004684-742 (예금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우리 1002-329-844347 (예금주: 이진화)

국민 498101-01-114263 (예금주: 이진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ttp://Lsangdam.org lsangdam@hanmail.net Tel. 02-703-3542 /FAX 02-703-3542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